

# 부패방지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의 법률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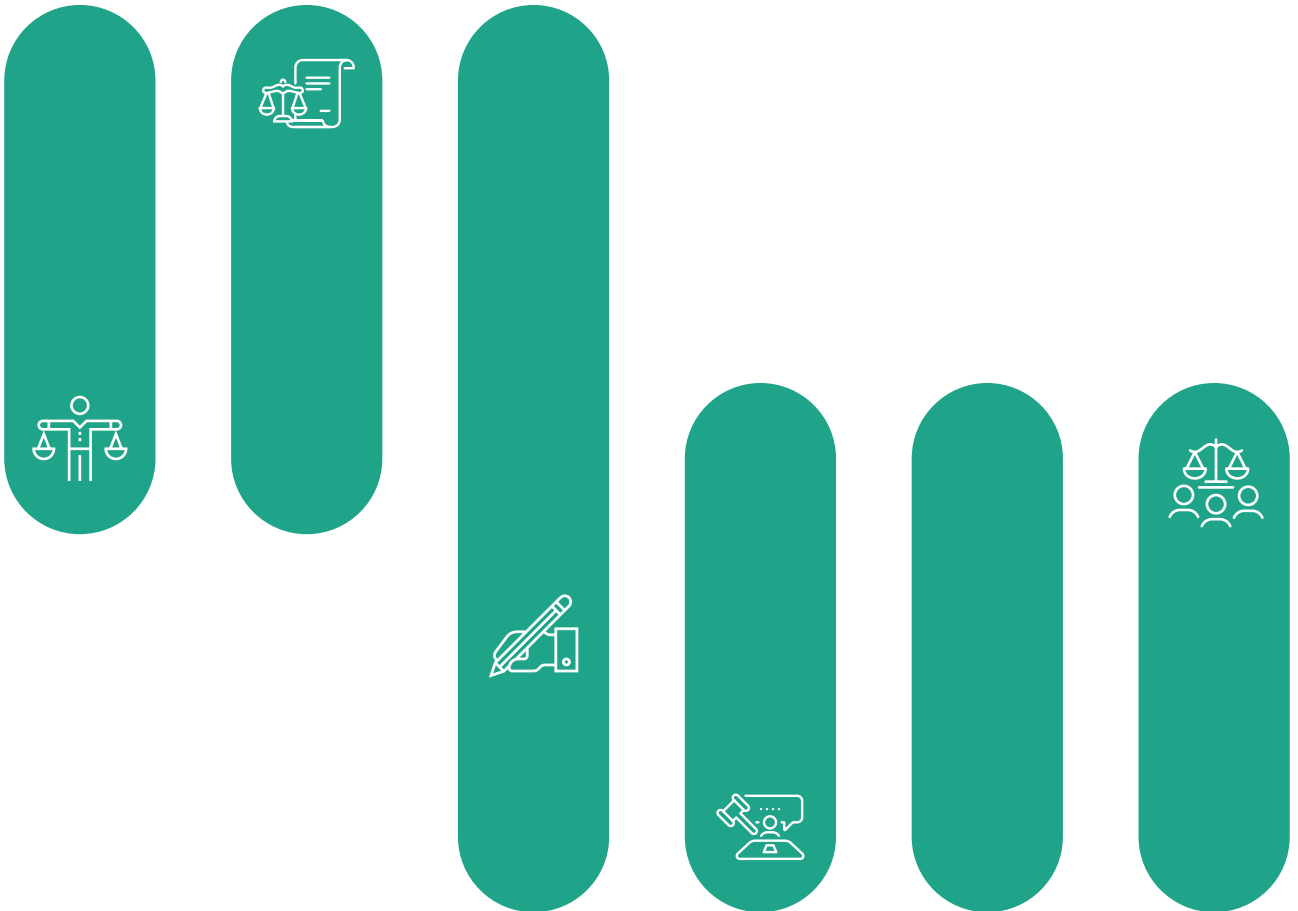
정윤정



# 부패방지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의 법률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

정운정



# CONTENTS

---

ISSUE  
PAPER

|                                             |           |
|---------------------------------------------|-----------|
| <b>요약문</b>                                  | <b>4</b>  |
| <b>Chapter.</b><br><b>01</b>                | <b>8</b>  |
| <b>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주요 쟁점</b>                    |           |
| 1. 입법평가의 필요성                                | 9         |
| 2.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 10        |
| <b>Chapter.</b><br><b>02</b>                | <b>12</b> |
| <b>부패방지 법제 개관</b>                           |           |
| 1. 개요                                       | 13        |
| 2. 부패방지 법제 연혁 및 내용                          | 14        |
| <b>Chapter.</b><br><b>03</b>                | <b>21</b> |
| <b>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호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b>      |           |
| 1. 개요                                       | 22        |
| 2.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호 규정의 차이에 대한 검토            | 23        |
| <b>Chapter.</b><br><b>04</b>                | <b>32</b> |
| <b>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상·포상 등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b> |           |
| 1. 개요                                       | 33        |
| 2.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상·포상 등 규정의 차이에 대한 검토       | 33        |
| <b>Chapter.</b><br><b>05</b>                | <b>38</b> |
| <b>개선방안에 대한 제언</b>                          |           |
| 1.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의 법률간 차이의 원인                 | 39        |
| 2.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일원화 방안             | 41        |
| <b>참고문헌</b>                                 | <b>44</b> |

# 부패방지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의 법률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

정윤정<sup>1)</sup>

## 요약문

### 1.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주요 쟁점

- 부패 예방 시스템 측면에서 건전한 신고 문화는 부패의 기회를 줄이고 청렴성을 강화하는 부패 예방의 유효한 수단임. 청렴문화를 유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신고 여건 마련을 위해 5개의 부패방지 관련 법률에는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및 신분보장등조치, 신분보호,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의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그간 부패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들이 강화되어 왔으나, 부패 예방 관련 5개 법률의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방식이 다르고, 5개 법률의 제정·개정 시기도 달라 신고자 보호·보상의 범위와 수준에 차이가 있는 상황임. 신고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패와 관련한 유사한 사안임에도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보호와 보상의 범위와 수준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복수의 법률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보호와 보상의 수준이 달라지는 혼란 발생도 우려됨.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차이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2. 부패방지 법제 개관

- 부패방지 법제인 5개 법률, 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연속적인 제정은 기존 법률의 한계로 드러난 부패 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부패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변화하였고, 다양화·은밀화·고도화된 새로운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기존의 법률이 통제하지 못한 한계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온 것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부문 위주의 부패행위를 정의하고 있고, 부패행위 신고와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공부문 부패 못지않게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부패행위 처벌에 관한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등 수수를 제재하고, 금품등 수수가 없는 부정청탁행위도 제재하기 위한 법으로, 이러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지원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재정의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으로,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3.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호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각 법률에 규정된 신고자 보호의 내용과 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비밀 보장 장치, 신고 또는 신고에 협조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 신고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해보부터 신변을 보호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음.
- 5개 법률상 신고자 보호 규정은 규정 방식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신고자 보호 규정 중 일부는 해당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일부는 다른 부패방지 법률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범위와 타 법률을 준용하는 범위가 5개 법률마다 다른 차이가 있음. 또한 타 법률에서 도입한 규정을 일부 법률은 도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동일하게 도입된 제도들에 있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나기도 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호제도 도입여부의 차이(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이한 벌칙의 차이(비밀보장위반에 대한 벌칙,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벌칙,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에 대한 벌칙 등), 그 외에도 보호 범위에서의 차이 및 절차적 차이(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차이, 책임 감면 내용의 차이, 신변보호 신청 주체 차이,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쟁송제기 규정의 차이 등)가 있음.
- 이러한 차이로 인해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법률은 강화된 신고자 보호 제도에 비해 미흡한 채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도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4.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상·포상 등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부패방지 법제에 규정된 신고자 보상 및 포상 등의 규정에는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시 지급되는 보상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신고로 인해 지출된 비용 및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지급되는 구조금 등이 있음.
- 5개 법률상 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규정은 규정 방식과 구체적인 기준에서 차이가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해당 법률에서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의 근거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보상금은 지급대상, 지급 요건, 보상금 산정기준의 차이가 있고, 포상금은 상한액의 차이가 있으며, 구조금은 지급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신고로 인해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은 유사함에도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이 공공기관 수입회복 증대에 대한 인센티브 및 신고로 인한 손해보전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함.

## 5.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5개 법률상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의 차이는 각 법률의 규제 목적 및 범위의 차이를 전제로 보호·보상 범위를 달리 정해야 할 필요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대부분 5개 법률의 제·개정 시점의 상이함과 준용규정의 차이 등 기술적 요인에 기인한 부분이 큰 점, 5개의 법률의 제정 과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 상승과 부패 개념의 확장을 반영한 입법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5개 법률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는 부패 영역의 차이나 경중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일부 부패 신고는 적용 법률의 중복 가능성도 있어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보호·보상의 범위가 다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은 부패관련 신고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보호·보상에 차별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대부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5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수준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음.
-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로는 5개 법률에 규정된 보호·보상 규정 방식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며 규정 간의 차이 없이 모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향후 일부 규정을 개정할 경우 5개 법률 모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음. 하지만 법률별로 직접 규정 조항과 준용 규정 조항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규정 간 차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면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음.
- 두 번째로는 하나의 법률,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호·보상 제도를 모두 규정하고 다른 4개의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호·보상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있음. 이 경우 대상 조문을 특정하여 준용하여야 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준용하는 의무조항에 대한 벌칙은 각 법률의 벌칙 규정에서 명시해 주어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보상 규정의 신설 및 체계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 역시 개정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음.
- 세 번째로는 하나의 법률에 보호·보상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개념을 부패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 이해충돌행위 신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부패 방지 관련 모든 신고자 보호·보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나머지 법률에서는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규정은 모두 삭제하는 방안임. 5개 법률에 각각 규율된 보호·보상 규정의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각 법률의 규제 목적에 따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의 법률에 모든 규정을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Chapter

---



##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주요 쟁점

|                |    |
|----------------|----|
| 1. 입법평가의 필요성   | 9  |
| 2.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 10 |

#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주요 쟁점

## 1. 입법평가의 필요성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sup>2)</sup> 평가에 있어 우리나라는 2022년 31위를 기록함.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가 위상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 부패인식도조사에서도 국민의 54.4%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38.6%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부패는 자원배분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서는 정부불신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 정책은 크게 세 가지 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첫 번째로 적발체계를 확립하고 부패 자산을 회복하는 제재의 측면, 두 번째로는 정보 공개 및 접근성의 확대와 국민의 정책 참여 등으로 대표되는 책임성 측면, 세 번째로는 투명한 행정 절차를 확립하고 공직자의 재량 남용 방지 등 다양한 부패방지 제도를 포괄하는 예방의 측면이 있음.
  - 부패 행위에 대한 적발과 제재는 전통적인 반부패 정책 수단으로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더 엄격한 법·제도 제정에 초점을 맞추는 반부패 접근은 그 효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보 접근성의 확대와 국민의 정책 참여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직자의 자율적인 청렴 실천을 유도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부패 문제에 있어 부패 예방 측면은 가장 핵심적인 반부패 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2) 반부패 분야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임.

- 사후적으로 부패를 적발하고 교정하는 직접적인 비용과 사회적인 불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간접적인 비용을 고려하면 부패 예방은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임. 부패 예방에 있어서 건전한 신고 문화는 부패의 기회를 줄이고 청렴성을 강화하는 부패 예방의 유효한 수단임.
  - 현행 부패방지 법제에 따라 누구나 각종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그간 도입·강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신고는 7,300건, 공익신고는 3,266건<sup>3)</sup>에 이르고, 부패·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한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불이익조치 원상회복·신변보호 등 총 49건의 보호조치와 총 62억여 원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이 이루어졌음.<sup>4)</sup>
-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 법제의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선진국 수준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부패방지와 관련된 5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시기가 다르고, 이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와 관련하여 5개 법률의 신고자 보호·보상의 범위와 수준이 서로 다른 상황임.
  - 현재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신고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5개 반부패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와 보상의 내용에 크고 작은 차이가 존재함.
  - 신고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패와 관련한 유사한 사안임에도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의 범위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음. 사안에 따라서는 복수의 법률이 적용 가능한 경우도 있고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음. 부패예방에 기여하는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차이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의 내용과 체계
  - 부패방지 법제는 부패 개념 및 규율 대상 확대에 따라 5개의 법률, 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전체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021년 한 해 동안 5,417,879건임.

4) 국민권익위원회, 2022 국민권익백서, 2023, 6쪽

순차적으로 제정되는 과정을 거쳐 왔음. 5개의 법률은 모두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일부 내용은 다른 법률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음. 직접 규정하는 내용과 준용하는 내용도 법률간 차이가 있고 신고자 보호·보상의 범위와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음. 5개 법률의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의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5개 법률의 제정 배경, 신고 대상, 보호·보상 규정 체계 등을 검토하는 것은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의 차이의 원인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후 각 법률에 규정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내용의 상세 차이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의 법률간 차이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개 반부패 법률의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들의 각각의 차이에 대한 상세 검토와 함께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 본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함. 이에 대한 논의 시 현재 규정들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외에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도입되거나 개선하여야 할 제도들은 논외로 함.

# Chapter

---



## 부패방지 법제 개관

|                    |    |
|--------------------|----|
| 1. 개요              | 13 |
| 2. 부패방지 법제 연혁 및 내용 | 14 |

---

## 부패방지 법제 개관

### 1. 개요

- 부패방지 법제인 5개 법률, 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연속적인 제정은 기존 법률의 한계로 드러난 부패 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부패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변화하였고, 다양화·은밀화·고도화된 새로운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기존의 법률이 통제하지 못한 한계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온 것임.
- 제일 먼저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며,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와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공공부문의 부패문제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공공부문의 부패만큼이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민간부문의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부패행위를 포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만,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는 각 행위유형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되고 있는 체계임. 전통적 의미의 부패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의 뇌물수수는 형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대가성 입증에 곤란한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음. 하지만 관행으로 여겨졌던 스폰서, 떡값, 전별금 등이나 대가와 결부되지 않은 청탁·금품수수 행위도 부정부패의 시발점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대가성이 없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sup>5)</sup>

5)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20, 16쪽.

- 전통적 의미의 부패는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과 같이 결과적으로 드러난 부패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최근의 부패 개념은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행위는 물론이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상의 신뢰성까지 포괄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경향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배경임.
- 이처럼 부패 개념의 확장에 따라 부패방지 법제라 할 수 있는 5개의 법률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었고, 각 법률의 규율 목적에 따라 규율 대상과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각 법률에서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신고자 보호·보상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법률별 제정배경 및 신고 대상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 부패방지 법제 연혁 및 내용

###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연혁
  - 이 법의 모법인 「부패방지법」은 2001.7.24. 제정되어 2002.1.25. 시행되었고, 최초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와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대해 규정함. 이후 부패방지 총괄기관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바뀌고 또다시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면서 2008.2.29. 「부패방지법」은 폐지가 되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음.
  -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부문 위주의 부패행위를 정의하고 있고, 그러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와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신고 대상
  -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제55조),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56조).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는 다음과 같으며,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재산이 관련되어 있는 공공부문 중심 부패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즉, 공공부문에서의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보상은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이익조치의 금지,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신분보장등의 조치 신청 및 결정과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이행강제금, 불이익 추정, 화해의 권고,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협조자 보호, 책임의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와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신고자 보상·포상 등과 관련해서는 보상금 지급 신청, 포상금 지급, 구조금 지급신청, 보상심의회위원회,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등의 상환 및 환수, 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 ● 연혁

-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 즉, 공공부문의 부패를 중심으로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을 적용하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부분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호는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음.
- 하지만 건강과 안전에 유해한 식품·물품의 제조·유통,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나 환경범죄 등 민간부분의 부패라고 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도 공공부문 부패 못지않게 사회적인 위해를 초래하고, 문제의 전문성과 큰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사후 대처로는 한계가 있어 사전 예방적인 시스템이 요구되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러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을 규정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자 2011.3.29. 제정되어 2011.9.30. 시행되었음.
-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민간부문에서 주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임.
- 법령에서 알 수 있듯이 신고자 보호가 주목적인 법으로 다른 부패방지 법률보다 신고자 보호의 범위와 수준이 강화되어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 대상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제6조). 또한 공직자는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6대 공익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행위가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제2조제1호)**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신고 대상 47개 법률<sup>6)</sup>을 위반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신고 대상 47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불이익조치의 금지,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보호조치 신청,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보호조치결정, 특별보호조치, 보호조치결정의 확정, 이행강제금,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불이익조치 추정, 화해의 권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신고자 보상·포상 등과 관련해서는 보상금 지급 신청, 포상금 지급, 구조금 지급 신청, 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보상금등의 환수,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6) 현행 법 별표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의료법」 등 47개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 당시 180개이던 공익신고 대상법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6년 1월에는 국민의 생활안전 관련 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 등의 법률이 추가되어 279개가 되었고, 2018년 5월부터는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신설되면서 관련된 5개 법률이 추가되었음. 2020년 11월에는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되어 467개가 되었고, 2021년 4월에는 「근로기준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4개 법률이 추가되어 현재의 471개 법률이 되었음(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매뉴얼, 2021, 28쪽)

##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연혁

-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로 부패신고 등 절차적인 사항 중심이며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은 그 행위유형에 따라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범죄구성요건들을 적용하고 있음.
- 하지만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고, 공직자가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음에도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은 공직자 부패행위 처벌에 관한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5.3.27. 제정되었고, 2016.9.28. 시행되었음. 청탁금지법은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등 수수를 제재하고, 금품등 수수가 없는 부정청탁행위도 제재하고 있음.

### ● 청탁금지법의 신고 대상

- 청탁금지법상 신고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sup>7)</sup>이 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 이행으로서의 신고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위반행위 신고가 있음.
- 청탁금지법상 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신고는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신고와 위반행위 신고 모두 대상이 되고, 신고자 보상의 대상이 되는 신고는 위반행위 신고만 해당됨.

#### 청탁금지법상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신고

-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등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 신고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7) “공직자등”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말함.

● 청탁금지법의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이익조치의 금지, 신고 취소 강요 금지, 책임감면, 이행강제금 등을 규정하고 있고, 비밀보장 의무, 신변보호조치,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불이익조치 추정,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신고자 보상·포상 등과 관련해서는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고 있음.

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연혁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도 부패행위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지원금 등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도 부패행위에 해당함. 하지만 각종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는 환수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이 상이한 문제점이 있었고,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전체 공공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의 필요성이 제기됨.<sup>8)</sup>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4.16. 제정되어 2020.1.1 시행되었음.
-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보상금·출연금과 같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제재금을 부과하며, 고액·상습 부정청구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재정환수법의 신고 대상

- 공공재정환수법상 신고에는 부정수익자의 자진 신고,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부정청구등의 신고가 있음.
- 공공재정환수법상 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신고는 부정수익자의 자진 신고와 제3자의 부정청구등의 신고 모두 대상이 되고, 신고자 보상의 대상이 되는 신고는 제3자의 부정청구등의 신고만 해당됨.

8)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공공기관 대상 매뉴얼, 2020, 6쪽.

### 공공재정환수법상 자진 신고

- 환수처분 사전 통지 전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

###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청구등” 신고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 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 공공재정환수법의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 접수·처리, 불이익 추정 등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관련 조항을 일부 준용하고 있음.
- 신고자 보상·포상 등과 관련해서는 보상금·포상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관련 조항을 일부 준용하고 있음.

##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 연혁

-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규범의 수준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직자가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참여하거나 밀접한 관계의 제3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등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즉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음.<sup>9)</sup>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등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9)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 2022, 6쪽.

행위기준<sup>10)</sup>을 담아 2021.5.18. 제정되어 2022.5.19. 시행됨.

●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 대상

-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에는 공직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하는 신고(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위반행위 신고가 있음.
-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자 보호·보상의 대상이 되는 신고는 위반행위 신고임.

●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신고 취소강요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비밀보장 의무,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중 일부 규정,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불이익조치 추정, 화해의 권고 등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일부 준용하고 있음.
- 신고자 보상·포상 등과 관련해서는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보상금·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관련 조항을 일부 준용하고 있고, 구조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10) 신고·제출 의무로는 사적이 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관련자인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 있음. 또한 제한·금지 행위로는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가족채용 제한, 수익계약 체결 제한이 있음.

## Chapter

## 3



##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호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    |
|-------------------------------------|----|
| 1. 개요                               | 22 |
| 2.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호 규정의<br>차이에 대한 검토 | 23 |

#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호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1. 개요

- 부패방지 법제 개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패 개념의 확장에 따라 5개의 법률은 각각의 규율 목적과 범위를 가지고 각 법률에서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규정하면서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도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각 법률에 규정된 신고자 보호의 내용과 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비밀 보장 장치, 신고 또는 신고에 협조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 신고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해로부터 신변을 보호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음.
  - 신고자 비밀 보장을 위한 장치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넓게 보면 신고자 비밀 보장을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음.
  - 불이익 방지를 위한 장치로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에 대한 제재, 불이익조치로 손해를 준 자에 대한 배상책임,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결정,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감면 등이 있음.
  - 신변 보호 장치는 신고자 주변에 가해지는 심리적이거나 물리적 위험상황을 예방하고 제거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경찰관서를 통한 신변경호, 주거 관찰 등의 조치가 있음.
- 5개 법률상 신고자 보호 규정은 그 규정 방식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신고자 보호 규정 중 일부는 해당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일부는 다른 부패방지 법률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범위와 타 법률을 준용하는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또한 타 법률에서 도입한 규정을 일부 법률은 도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동일하게 도입된 것들도 세부적인 범위에서 차이가 나기도 함. 신고자 보호 규정들의 구체적인 차이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호 규정의 차이에 대한 검토

### 가. 보호대상 제외 신고

#### ● 개요

- 5개의 법률은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허위 등의 신고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고의 오남용을 막고 있음

#### ● 문제점

-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신고에 대한 규정의 차이
  -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고를 규정함에 있어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허위신고일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허위신고 이외에 부정한 목적의 신고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공공재정환수법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음. 신고 오남용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에는 보호에서 제외되는 신고를 새로이 규정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부정 목적의 신고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표 1 보호대상 제외 신고의 차이

| 구분             | 부패방지권익위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br>이해충돌방지법                                                                                 | 공공재정<br>환수법 |
|----------------|-----------------------------------------------|---------------------------------------------------------------------------------------------------------------|-------------|
| 보호 대상<br>제외 신고 | •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 •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br>•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br>•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 | 규정 없음       |

### 나. 비밀 보장

#### ● 개요

-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신고자 보호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임.

#### ● 문제점

- 비밀보장위반에 대한 벌칙의 차이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탁금지법과



공공재정환수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신고자의 인적사항 유출이라는 위반행위는 같지만 적용 법률에 따라 벌칙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또한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법률은 강화된 처벌규정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음.

## 다. 비실명 대리신고

### ● 개요

- 신고의 방법은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한 것임. 변호사 대리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같음함.

### ● 문제점

- 일부 법률의 제도 미도입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에는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이 있으나, 공공재정환수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이 없어 신고자 신분 노출 우려에 대한 충분한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라.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 ● 개요

-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제도임.

### ● 문제점

-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의 차이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과 공공재정환수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위반행위는 같지만 적용 법률에 따라 벌칙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또한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법률은 강화된 처벌규정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음.

## 마. 불이익조치 금지

### ● 개요

-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불이익조치란 신분상실, 부당한 인사조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등의 차별 지급,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행정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 등을 말함.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불이익조치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이러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공공재정환수법은 ‘불이익조치’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방식에 차이가 있음.

### ● 문제점

-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도입의 차이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는 신고자에게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절차가 예정돼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원상회복 등 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국민권익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 진행의 잠정 중지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신고자 보호제도로 신고자에 대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가 있음.
  - 하지만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만 규정<sup>11)</sup>되어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 경우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진 후에야 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가 가능한 한계가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고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 수단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와 구별됨.
-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벌칙의 차이
  - 신분상실 조치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탁금지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상이한 문제가 있음.

11)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신분상실 이외의 인사상 불이익조치, 임금 등의 차별지급,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조치, 정신적·신체적 손상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나 그 결과의 공개 조치의 경우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탁금지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공공재정환수법은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경우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비해 제재의 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음.
- 인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5개 법률 모두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표 2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벌칙의 차이

| 구분          | 신분상실 조치               | 신분상실 이외의 불이익조치        |
|-------------|-----------------------|-----------------------|
| 부패방지권익위법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청탁금지법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이해충돌방지법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공재정환수법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여부 차이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신고자에게 손해를 입으면 그 손해에 대해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피해액보다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신고자에 대한 구제를 두텁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하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 있지 않음. 불이익조치로 신고자가 입을 피해에 비해 불이익조치자는 원상회복의 이행만 하면 크게 피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없다면 불이익조치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바. 보호조치

● 개요

-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상회복 조치,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의 보호조치결정을 함.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 문제점

• 보호조치 규정 구조의 차이 및 용어의 혼재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정의 규정과 함께 불이익조치 금지를 규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이러한 조치를 “신분보장등조치”로 약칭하고 이와 관련한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호조치”로 약칭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규정하고 있음.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조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반면 공공재정환수법은 약칭 없이 신분보장 조치(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인가·허가·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열거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신고자의 조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보호조치 구조와 용어에 있어 차이가 있음. 향후 5개 법률상 보호조치 규정 구조와 용어의 통일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호조치 조사 자료제출 요구 거부에 대한 벌칙 차이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출석 요구,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공공재정환수법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보호조치결정 이행 확보수단의 차이

- 보호조치결정을 정해진 기한까지 취하지 아니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공공재정환수법에는 이행강제금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청구 신고의 경우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의 이행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보호조치결정 불이행<sup>12)</sup>에 대한 벌칙의 차이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 공공재정환수법은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을 말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탁금지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공공재정환수법은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한자가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 외의 자가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위반행위는 유사함에도 적용 법률에 따라 벌칙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범죄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경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공재정환수법은 보호조치결정의 확정과 관련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죄 성립 시기가 일치하지 않음.

표 3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벌칙 차이

| 구분       | 부패방지 권익위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청탁금지법                    | 공공재정 환수법                                                                                    | 이해충돌 방지법                 |
|----------|--------------------------|--------------------------|--------------------------|---------------------------------------------------------------------------------------------|--------------------------|
| 이행 강제금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                                                                                           | 3천만원 이하                  |
|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br>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br>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br>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br>1천만원 이하의 벌금<br>(신분상불이익, 근무<br>조건상 차별을 한 자)<br><br>1천만원 이하의<br>과태료<br>(그 이외의 자) | 3년 이하의 징역<br>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범죄 성립 시기 |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            | 보호조치결정 확정                | 보호조치결정 확정                | 조치요구 불이행                                                                                    | 보호조치결정 확정                |

•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차이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적 불이익조치와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인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뿐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가하지 않고 있음.
- 공공재정환수법은 인허가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쟁송제기 규정의 차이

-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불이익조치를 한 소속기관장등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조치 신청자에 대한 규정은 없어 신청자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호조치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각하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한편 공공재정환수법은 행정쟁송 제기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인과 불이익조치자 모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표 4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가능 여부

| 구분       | 부패방지권익위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청탁금지법 | 공공재정 환수법 | 이해충돌 방지법 |
|----------|----------|-------------|-------|----------|----------|
| 불이익조치자   | X        | X           | X     | ○        | X        |
| 보호조치 신청자 | ○        | X           | X     | ○        | X        |

## 사. 책임의 감면

● 개요

-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도 면제됨.

● 문제점

• 책임감면 내용의 차이

- <표 5>와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가장 넓게 책임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은 일부 규정이 미흡함.

표 5 책임감면 내용의 차이

| 책임감면 내용                                        | 부패방지<br>권익위법 | 「공익신고자<br>보호법」 | 청탁<br>금지법 | 공공재정<br>환수법 | 이해충돌<br>방지법 |
|------------------------------------------------|--------------|----------------|-----------|-------------|-------------|
| 형의 감경 또는 면제                                    | 규정           | 규정             | 규정        | 규정          | 규정          |
|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의 징계·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sup>13)</sup>  | 규정           | 규정             | 규정        | -           | 규정          |
|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행정처분의 감명 또는 면제의 요구 | 규정           | 규정             | -         | 규정          | 규정          |
|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 및 의견 진술 요청   | -            | 규정             | -         | 규정          | 규정          |
| 담당 재판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제출                      | 규정           | 규정             | -         | -           | 규정          |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의 면제                                | 규정           | 규정             | 규정        | 규정          | 규정          |
|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 -            | 규정             | 규정        | -           | 규정          |
| 신고 금지·제한을 규정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공급계약의 무효             | -            | 규정             | 규정        | -           | 규정          |

## 아. 신변 보호

### ● 개요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관서를 통해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신변보호조치로는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관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가 있음.

### ● 문제점

- 신변보호조치 신청 주체의 차이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이와 달리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공재정환수법은 신고주체를 신고자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신고자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도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음.

13)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행정처분의 감명 또는 면제의 요구와 구분됨.

- 신변보호조치 요구 대상 차이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공재정환수법은 신변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찰관서의 범위가 상이하어 이에 대한 일치가 요구됨.



# 4



##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상·포상 등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    |
|------------------------------------------|----|
| 1. 개요                                    | 33 |
| 2.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상·포상 등<br>규정의 차이에 대한 검토 | 33 |

#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상·포상 등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1. 개요

- 부패방지 법제에 규정된 신고 보상·포상 등의 규정은 신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함으로써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더 큰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것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또는 손해보전의 의미가 있음. 이에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시 지급되는 보상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신고로 인해 지출된 비용 및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지급되는 구조금이 있음.
- 5개 법률상 보상금·포상금·구조금 규정은 그 규정 방식과 구체적인 기준에서 차이가 있음.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해당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은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의 근거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부패방지법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음. 보상금·포상금·구조금 규정의 구체적인 차이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상·포상 등 규정의 차이에 대한 검토

### 가. 보상금

- 개요
  - 신고로 인한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 신고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및 비용의 절감이 발생된 것이므로 그 기여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문제점

• 보상금 지급대상의 차이

-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고자를 규정함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신고내용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한 신고자 모두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하여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반면에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일반국민이 신고한 경우와 공직자가 신고한 경우 보상금 신청 자격에 있어 차이가 있음. 공직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공직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일반국민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신고자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고자가 어디에 신고했는지에 따라 보상금 신청 자격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접수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감사원도 포함되는 반면, 일반국민의 경우 부패행위 신고접수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부패행위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고기관도 확대하고 보상금 신청자격도 신고기관에 관계없이 신고자 모두에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조직의 구성원 또는 계약상대방 등 업무상·계약상 일정한 관계에 있는 내부 공익신고자<sup>14)</sup>만 신청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을 한정하는 것은 공익신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자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sup>15)</sup> 내부 공익신고자이면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 신고한 신고자도 보상금 신청자격이 있음.

• 보상금 지급 사유의 차이

- 신고로 인한 '부과 및 환수 등'이 있고, 이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어야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데, 구체적인 '부과 및 환수 등'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14)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①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②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15)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매뉴얼, 2021, 114쪽.

5개 법률간 차이가 존재함. 혼돈 방지를 위해 5개 법률에 규정된 모든 사유를 포괄하여 통일할 필요가 있음.

표 6 보상금 지급 사유 규정의 차이

| 지급사유 규정                  | 부패방지권익위법<br>청탁금지법<br>이해충돌방지법 | 「공익신고자<br>보호법」 | 공공재정<br>환수법 |
|--------------------------|------------------------------|----------------|-------------|
| 벌칙 또는 통고처분               | ○                            | ○              | -           |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                            | ○              | -           |
|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 ○                            | ○              | -           |
| 이행강제금의 부과                | -                            | ○              | -           |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                            | ○              | -           |
|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           | -                            | ○              | -           |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                            | ○              | -           |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                            | ○              | -           |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                            | -              | -           |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                            | -              | -           |
| 부정이익등 환수                 | -                            | -              | ○           |
| 제재부가금 부과                 | -                            | -              | ○           |

• 보상금의 산정기준의 차이

- 지급한도 30억원은 동일하지만, 법률간 산정기준에 있어 차이가 있음.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동일한 산정기준을 가지고 있고, 보상대상가액 구간별로 지급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보상대상가액이 클수록 지급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과 다른 구간별 지급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지급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임.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지급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는 고액보상금 지급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반면 공공재정환수법은 구간의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보상대상가액의 30%로 규정하고 있어 고액보상금 지급에 보다 유리한 구조임.

표 7 보상금 산정기준 차이

| 보상대상<br>가액         | 법률별 산정기준                     |                        |                 |
|--------------------|------------------------------|------------------------|-----------------|
|                    | 부패방지권익위법<br>청탁금지법<br>이해충돌방지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공재정<br>환수법     |
| 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 보상대상가액의 20%            | 보상대상가액<br>의 30% |
| 1억원 초과<br>5억원 이하   | 3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                 |
| 5억원 초과<br>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         |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                 |
| 20억원 초과<br>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8%         |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                 |
|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

※ 보상대상가액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나. 포상금

### ● 개요

- 신고로 인해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가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신고자의 신청 없이 공익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함. 보상금과 포상금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보상금 관련 내용을 포상금으로 포섭하는 다른 법률과 달리 부패방지 법제에서는 포상금과 보상금을 구별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 문제점

- 지급 상한액의 차이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포상금 상한액은 5억원이며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은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상 상한액은 2억원으로 포상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일치가 필요함.
- 지급 사유 규정의 차이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상 포상금 지급사유는 동일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포상금 지급사유는 다른 법률들의 규정에 비해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일치가 필요함.

표 8 포상금 지급 사유 규정의 차이

| 구분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br>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
| 지급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행위자(부정수익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li> <li>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li> <li>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li> <li>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li> <li>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li> <li>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li> <li>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li> <li>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li> </ul> |

## 다. 구조금

### ● 개요

-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임금 손실 등 피해를 입었거나 치료비, 이사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여 신고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 문제점

#### ● 일부 법률 미 도입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구조금 신청 및 지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재정환수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에 대해서는 구조금 지급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 구조금 지급 범위 차이

- 구조금 규정이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함.
- 하지만 쟁송비용 관련 구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은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쟁송절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의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반면에 이해충돌방지법은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 비용’(해고와 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의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들에 비해 쟁송절차 소요비용 구조금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음.

## Chapter

## 5



##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                                    |    |
|------------------------------------|----|
| 1.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의<br>법률간 차이의 원인     | 39 |
| 2.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br>일원화 방안 | 41 |

# Chapter 5

##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1.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의 법률간 차이의 원인

- 5개 법률상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의 차이는 각 법률의 규제 목적 및 범위의 차이를 전제로 보호·보상 범위를 달리 정해야 함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주로 5개 법률의 제·개정 시점이 상이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은 애초에 부패방지권익위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었음. 이후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지만, 2017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음. 이후 2019년 부패방지권익위법도 다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음. 하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개정되기 전에 제정된 청탁금지법과 공공재정환수법은 상향되기 이전의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상향된 벌칙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차이가 발생함.
- 또 다른 예로 신고자 보호에 있어 가장 차이가 큰 규정으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규정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의 원인 역시 5개 법률간 제·개정 시점의 차이로 볼 수 있음. 최초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에 대해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분보장 등’이라는 제목의 조문에서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대한 보호로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파악하였음. 이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호수준을 강화하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개념<sup>16)</sup>과 불이익조치 금지를 먼저 규정한 후 이에 대한 보호조치로 원상회복 조치,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의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폭넓게 불이익조치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이와 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부패방지권익위법도 이후 2019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구조로 개정하여 불이익조치 개념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는 것으로 구조가 변경되었지만, 용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와 같은 ‘보호조치’로 변경하지 않고 ‘신분보장등 조치’라는 용어의 사용을 유지하여 현재와 같이 ‘신분보장등 조치’와 ‘보호조치’ 용어의 혼재가 발생함.

- 한편, 2019년 이전에 발의되어 통과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개정 전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분보장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이후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과는 다른 구조의 보호조치개념을 가지고 있고, 조치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도 가장 약한 수준임.

- 보호·보상을 규정함에 있어 직접 규정하는 범위와 타 법률 규정을 준용하는 범위가 제각각인 점도 혼선을 유발하는 요인임. 또한 준용되는 법률에서는 일부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준용하는 법률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 예를 들어 2015년에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신고의 접수·처리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제정 당시에는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이 없었으나 이후 2018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비실명 대리신고 조문이 신설되자 청탁금지법도 이를 반영하여 2021년에 비실명 대리신고 조문을 신설함. 반면에 2019년에 제정된 공공재정환수법은 신고의 접수·처리에 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제56조, 제57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후 2022년에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가 신설되었지만, 공공재정환수법의 준용규정은 그대로 유지된 결과 공공재정환수법에는 비실명 대리신고가 도입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이 상이한 것은 대부분 5개 법률의 제·개정 시점의 상이함과 준용규정의 차이 등 기술적 요인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는 점, 부패방지 법제 개관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패예방을 위한 5개의 법률인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과정은 우리 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부패의 개념이 확장되고 이를 반영한 입법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5개 법률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는 부패 영역의 차이나 경중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일부 부패 신고는 적용 법률의 중복 가능성도 있어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보호·보상의 범위가

16)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평가 등의 차별과 임금 등의 차별,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를 포함함.

다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은 부패관련 신고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보호·보상에 차별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대부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5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수준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음.

## 2.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일원화 방안

-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로는 5개 법률에 규정된 보호·보상 규정 방식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며 규정 간의 차이 없이 모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향후 일부 규정을 개정할 경우 5개 법률 모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음. 하지만 법률별로 직접 규정 조항과 준용 규정 조항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규정 간 차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면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음.
- 두 번째 방안으로는 하나의 법률,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호·보상 제도를 모두 규정하고, 다른 4개의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호·보상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있음. 원칙적으로 준용 대상 규정과 준용 규정은 연동되어 있고, 준용 대상 규정이 개정되면 준용 규정에서도 개정된 준용 대상 규정의 내용을 계속 준용하게 되므로<sup>17)</sup> 관련 내용이 개정되어도 5개 법률의 보호·보상 규정을 일원화할 수 있음. 이 경우 준용 대상 규정은 5개 법률에 규정된 각 제도들을 모두 검토하여 신고자에게 유리한 조문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어떤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 조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법령 전체를 준용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준용 방식은 준용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 준용 규정을 두기보다는 대상 조문을 특정하여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sup>18)</sup> 한편, 특정 조항의 의무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에 따른 처벌 규정까지 준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이 되므로 각 법률의 벌칙 규정에서 준용하는 의무조항에 대한 벌칙을 명시해 주어야<sup>19)</sup> 하는 한계가 여전히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보상 규정의 신설 및 체계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 역시 개정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음.
- 세 번째로는 하나의 법률에 보호·보상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개념을 부패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 이해충돌행위 신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부패 방지 관련 모든 신고자 보호·보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나머지 법률에서는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규정은

17)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2, 803쪽

18)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2, 803쪽

19)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2, 798쪽

모두 삭제하는 것임.<sup>20)</sup> 이 경우 보호·보상 제도는 5개 법률에 규정된 각 제도들을 모두 검토하여 신고자에게 수익적인 규정은 5개 법률 중 유리한 조문으로, 규정 위반 제재의 경우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각각의 법률별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달리 규정할 이유가 대부분 없다는 점과 5개 법률에 각각 규율된 보호·보상 규정의 불일치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각 법률의 규제 목적에 따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경우<sup>21)</sup>에는 하나의 법률에 모든 규정을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

20)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22, 5~6쪽

21) 예를 들어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불이익조치자·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신고 방해 또는 취소 강요자에 대한 벌칙 부과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민간영역 부패에 특화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만 규정된 특수한 보호조치임.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특별보호조치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실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 신고자가 신고 당시 신고 내용이 특정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믿고 신고한 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규정된 것임.(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매뉴얼, 2021, 98-99쪽) 이를 통해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체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특별보호조치를 준용하고 있음.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공공기관 대상 매뉴얼, 2020.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매뉴얼, 2021.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 2022.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20.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22.
- 국민권익위원회, 2022 국민권익백서, 2023.
-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22.

입법평가 ISSUE PAPER 23-14-⑤

## 부패방지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의 법률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

발행일 2023년 7월 31일

발행인 한영수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 861. 0300 | F. 044. 868. 9913

등록번호 1981. 8. 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 부패방지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의 법률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 861. 0300 F. 044. 868. 9913

